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39

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이재명·강득구·김승원

김주영 • 박균택 • 박찬대

박해철 • 박홍배 • 안호영

임광현 · 장경태 · 정준호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, 기숙사,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기업과 일자리 증가에 따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일부 증가하고 있으나, 노동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제도 내용도 복잡해져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,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.

특히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 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,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 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.

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 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행 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됨.

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것임(안 제101조 및 제106조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재명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03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1조제1항 중 "근로감독관"을 "근로감독관(이하 "중앙근로감독관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06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 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·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에 근로감독관(이하 "지방근로감독관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- ③ 지방근로감독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06조 중 "장에게"를 "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1조(감독 기관) ① 근로조건	제101조(감독 기관) ①
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	
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	<u>근</u>
로감독관을 둔다.	로감독관(이하 "중앙근로감독
	<u>관"이라 한다)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106조에 따라 근로조건의
	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노
	<u>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</u>
	<u>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</u>
	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
	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
	시・도・특별자치도에 근로감
	독관(이하 "지방근로감독관"이
	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③ 지방근로감독관은 사업 또
	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
	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 법에서
	정한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수
	<u>행한다.</u>
<u>②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106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	제106조(권한의 위임)
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	

대부	통i	경 5	청으	로	정칭	하는	- 1:	바에		W)
라	_	1	일투	브를	지	방	고용	누노	동	관
서	의	장	에거	위 우	임임	할	수	있ા	구.	

<u>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</u>
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
자치도지사에게